

차장 인	인사장	부 조	주소지 1993. 6. 6.
장 인	인사장	부 조	주소지 1993. 6. 6.
불리소가소중지사전기록			
198 6 년	19828, 19837 19969, 19970	198 6. 8. 19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집 월 일	19 6. 8. 19		
1의가	1의나, 2, 3, 4, 5, 6, 7	198 6. 8. 22	
사 전	1의나, 2, 3, 4, 5, 6, 7	198 6. 8. 22	
월 일	198 6. 8. 22	198 6. 8. 22	
공스킬 없음	공스킬 없음	198 6. 8. 22	
기 스 총 지	기 스 총 지	198 6. 8. 22	
명 령	명 령	198 6. 8. 22	
기 관 수 대로	기 관 수 대로	198 6. 8. 22	
본 환 부	본 환 부	198 6. 8. 22	
제출인 환부	제출인 환부	198 6. 8. 22	
파해자 환부	파해자 환부	198 6. 8. 22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문귀동은 경장으로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던자,
같은 한희정, 같은 황병선은 순경으로 같은과 형사계에 근무하는자,
같은 옥봉환은 총경으로서 부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자,
같은 박성용은 경위로서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던자
같은 이흥기는 순경으로 부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는자,
같은 권인숙은 공문서변조, 동행사, 절도죄로 1986. 7. 3. 구속기소
되어 인천소년교도소에 구속중에 있는자 등인바,

1. 피의자 문귀동은

가. 1986. 6. 6. 04:00 - 06:30경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상피의자 권인숙을 상대로 5.3
인천소요사건 관련 수배자의 소재를 조사하면서 동녀에
게 등 수배자중 아는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라고 추
궁하였으나 동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켓과 남방바지를
벗게한 후 젖가슴을 들추어보고 다시 동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직접 끌어내린다음 상피의자 이흥기를 불러
입회시킨 가운데 계속 추궁하여도 여전히 불응한다는 이
유로 옷위로 젖가슴을 3 - 4회 주무르면서 위 이흥기에
게 "고추가루 물 가져와" 라고 말하여 마치 고추가루
물로 고문을 할 것처럼 협박하는등 강제로 수행하는 동시
에 가혹행위를 하고

" 권양, 오늘부터 데우가 달라져 " 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위 문귀동에게 " 오늘부터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 " 라고 지시하여 위 문귀동으로 하여금 위와같은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5. 피의자 이홍기는



1986. 6. 6. 04:00 - 06:30경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위 문귀동이 위 권인숙을 조사할때 입회하여 위 문귀동이 고추 가루 탄 물을 가져오라고 하자 이에 호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등 위 문귀동의 가혹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6. 피의자 권인숙은

가. 1986. 6. 23. 11:00경 인천소년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변호사 손태봉과 접견시 위 문귀동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듯이 말하여 다수인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위 문귀동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귀동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1986. 7. 3. 인천지방법검찰청에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수사한 결과

1. 피의자 문귀동의 이견 피의사실증

가. 피의자가 86. 6. 6. 04:00 - 06:30경 사이에 위 권인숙을 상대로 5. 3 인천소요사건 관련 수배자의 소재를 조사하던중 동녀에게 수배자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라고 추궁하면서 "네 짝은 엄연한 실경법 위반이므로 다른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자와는 달리 정책변화에 의해 감형될 수 있는 죄가 아니야, 네 짝은 1년이상 10년이하에 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수배된

자들을 검거할 수 있게 해주면 훈방이나 구류로 처분해
 줄수 있어 " 라고 말한사실, 동 너가 순순히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동 너로 하여금
 상의증 겹옷인 자켓과 남방셔츠를 벗게한 후 턱사스 위로
 젖가슴부위를 3-4회 가량 쥐어박고, 입 획하였던 위 이흥기
 에게 고추 가루물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마치 고추 가루 물로
 고문을 할 것 처럼 위협한 사실, 86. 6. 7. 21:00 - 23:00경
 사이에 다시 위 권인숙을 조사하던중 동 너에게 " 토요일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너를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다시 출근했잖아, 너의 자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냐,
 네가 조사를 하면 간첩도 분다. 너같은 년은 처음 본다 "

는 등으로 폭언한 사실, 위 한희정, 황병선등이 조사도중
 조사실로 들어와 위 권인숙에게 수배자 사진첩을 제시하고
 아는사람이 있는지를 추궁한 사실, 그후 피의자가 동 너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채 단독으로 조사를 하면서 수배자중
 아는사람을 대라고 계속 추궁하였으나 동인이 모른다고

하자 동 너의 젖가슴 옷위로 3-4회 가량 쥐어박은 사실
등은 피의자의 일부 자백과 위 권인숙 몇 위 이흥 기등의
과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권인숙은 피의자가 86. 6. 6. 04:00 - 06:30경
사이에 자신을 조사할때 겹옷을 벗게한 후 젖가슴을 들추어
보고 다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끌어내린 다음 옷위로
자신의 젖가슴을 3-4회 주물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및
위 이흥 기의 과 진술과 당시 조사를 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였던 분위기등에 비추어 피의자는 위 권인숙의 바지 지퍼
를 내려거나 젖가슴을 주무른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젖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쥐어박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이상과 같은 사실 이외에 피의자가 86. 6. 7. 21:00 - 23:00
경 사이에 위 권인숙을 조사하던중 위 한희정과 황병선을
불러 동 너의 양팔을 등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다리
안쪽에 나무봉을 끼어 끌어안고 있다가 나무봉으로 동 너의

남 적다리와 허리부위를 수회 구타하였다는 점은 피의자가
 당시 제3호 조사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순경 김해성으로
 부쳐 수갑을 빌려 위 권인숙의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
 하고 있을때 위 한희정과 황병선등이 들어와서 수배자
 사진첩을 제시하고 수배자중 아는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을뿐 동인들이 위 권인숙을 나무봉으로
 구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극구 주장하고  위
 한희정 및 황병선도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권인숙도 나무봉으로 구타당한 사실은 있으나
 누구로부터 구타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녀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다음, 피의자가 86. 6. 7. 21:00 - 23:00경 사이에 위
 권인숙을 조사하던중 동녀의 젖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후 손으로 동녀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동녀의 음부에 대어 수회 비비는등

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피의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 권인숙을 조사하던 제 2호
 조사실과 인접한 제 3호, 제 5호, 제 7호 조사실에서 각각
 일을 하고있었던 위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김해성,
 권오성, 박경천등도 당시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면서 제 2호
 조사실 앞을 왕래한 바 있으나 위와같은 사실을 목격하거나
 감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권인숙과 함께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최옥자, 박외숙도 위 권인숙이 자신들에게 경찰관들로 부려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였으나 성기를
 꺼내어 음부에 비치는등의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상황을 보더라도 위 제 2호 조사실은 북쪽에 가로 1.75
 미터, 세로 1.95미터의 유리창문 1개가 있고, 서쪽에 같은
 크기의 유리창문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쪽 유리창에서
 12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기고에 200와트짜리 외등이

켜져 있고 그앞을 매시간마다 2인1조의 순찰조가 순찰을
 돌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조사실과 조사실
 사이의 칸막이는 두께 5센티미터 가량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옆방에서 타자치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인데 이러한 곳에서 허위진술을 계속하는 피조사자를
 상대로 임문을 하던 조사자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비정
 상적인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권인숙은 문귀동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추행을 당할때 반항하거
 나 소리를 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조사후에도 일체 항의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점 또한 상식상 납득
 할수 없으므로 위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

- 라. 피의자의 이견 피의사실중 위와같이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독직가혹행위 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나 이는 피의자
 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이미 피면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피의자가
10여년간 경찰관으로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등 그 정상
에 참작할 사유가 많으므로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2. 피의자 한희정, 같은 황병선의 이권 피의사실은
위 1항 나호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

3. 피의자 옥봉환의 이권 피의사실은
피의자가 86. 6. 6. 02:50 비상소집이 있었으나 전날부터 예고된
비상소집이었기 때문에 05:00경 출근하였고, 위 권인숙을 상면
하거나 동녀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군"이라는 말을 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피의자 박성용, 위 문귀동등도 피의자를
상면하거나 피의자로부터 위와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설사 위 권인숙의 진술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군" 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성이 없는 그 말만으로는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범죄 혐의가 없다.

4. 피의자 박성용의 이권 피의사실은

피의자는 위 문귀동에게 "오늘부터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 라고 지시한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문귀동도 그러한 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 권인숙의 대학친구 이향숙도 피의자가 권인숙과 자신을 대질시킬때 위 문귀동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피의자 및 위 문귀동의 각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가사 위 권인숙의 진술대로 피의자가 "오늘부터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 이 바로 가혹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

5. 피의자 이흥기의 이권 피의사실은

피의자는 위 문귀동이 위 권인숙을 조사할때 잠시 입회하였을 뿐

동인의 범행에 가담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권인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는 위 문귀동이 조사할때 입회하여서 있었다는 것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문귀동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

6. 피의자 권인숙의 이권 피의사실중



가. 명예훼손의 점은, 피의자가 손태봉 변호사와 접견할때 위와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외부에 전파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말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나. 무고의 점은, 위 1항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위 문귀동에 대한 고소사실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고판단 : 문귀동의 고소 및 권인숙의 변호인 고영구 외 8명의
고발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무고혐의를 인정키 어려움.)



서/문/준

" 별지 "

피 의 자
=====

- | | |
|---|-----------------|
| 1. 가, 나 | 문 귀 동 (文 貴 童) |
| 2. 가, | 한 희 정 (韓 喜 正) |
| 3. 가, | 황 병 선 (黃 炳 善) |
| 4. 다, | 옥 봉 환 (玉 鳳 煥) |
| 5. 다,  | 박 성 용 (朴 成 龍) |
| 6. 락, | 이 흥 기 (李 興 基) |
| 7. 마, 바 | 권 인 숙 (權 仁 淑) |

직 명
=====

- 가. 독직 가혹 행위
- 나. 강제추행
- 다. 독직 가혹 행위고사
- 락. 독직 가혹 행위방조
- 마. 명예훼손
- 바. 무고

